

「평창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년 8월 13일, 평창군수
- 회부일자 : 2019년 8월 22일 회부
- 상정일자 : 제248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2019년 8월 22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도시주택과장)

가. 제안이유

- 국민주택 건설·공급 사업의 효율적인 시행과 주택자금의 관리를 위해 1977년부터 주택사업특별회계를 운용하여 왔으나, 현재 세입재원이 미미하며 또한 국민주택사업을 시행하지 않으므로, 특별회계 운용의 실효성이 없어 주택사업특별회계 및 관련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평창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함
- 종전의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일반회계로 귀속함(안 부칙 제2조제1항)
- 종전 주택사업 특별회계의 채권·채무 등 모든 권리·의무는 일반회계가 승계함(안 부칙 제2조제2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최순철)

- 본 조례안은 40년이 지난 국민주택 보급사업 제도에 대한 운영가치가 떨어지고 세입재원이 미미하여 특별회계의 설치의 필요성이 없어짐에 따라 특별회계 설치근거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
기존 특별회계에 남아있는 부분은 일반회계로 귀속 운용될 계획입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의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평창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1부.

평창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평창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별회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평창군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이 조례 시행일에 평창군 일반회계로 귀속된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평창군 주택사업 특별회계의 채권·채무 등 모든 권리·의무는 이 조례 시행일에 평창군 일반회계가 승계한다.